

|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16919      |
| 의 퇴 인  | 박수영 의원       |
| 회 답 일  | 2026. 4. 28. |
| 추 계 번호 | 26A0440      |

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관련 연금 및 사회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,688만원, 2031년 1,828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,272만원(연평균 1,054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만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 | 2028 | 2029  | 2030 | 2031  | 합계    | 연평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<br>(안 제92조의2 신설) | 1,688 | —    | 1,756 | —    | 1,828 | 5,272 | 1,054 |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<br>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1      | 안 제92조의2<br>(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) | ○ 사회보장제도 관련 연금 및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 실시<br>— 2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 | 의무<br>규정 |

## 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92조의2(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) | ○    |               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관련 연금 및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의 재정 소요액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한 장기재정전망 실시 시 구성<sup>1)</sup>되는 ‘장기 재정전망소위원회’의 최근 운영비용 수준을 준용하여 추계함
  - 기획재정부의 ‘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장기재정전망소위원회 (운영기간: 2024~2025년)’ 운영비용(1,618만원)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   - 장기재정전망소위원회 운영비는 장기재정전망 전체회의 운영비(1,450만원)와 협의체 및 추계실무단 회의비(168만원)로 구성되어 있음
  - 추계기간 동안 장기재정전망소위원회 운영비용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(2026.3.)을 반영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: 2026~2031년

(단위: %)

| 구 분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
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소비자물가상승률 | 2.3  | 2.0  | 2.0  | 2.0  | 2.0  | 2.0 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2026.3.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법안 심의기간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설정함
  -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최초의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여야 함

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제3차 장기재정전망소위원회(운영기간: 2024~2025년)의 전체회의 운영비와 협의체 및 추계실무단 회의비는 다음과 같음

1)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은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통해 실시되며, 민간전문가·관계부처·관련공단 등이 참여하는 「장기재정전망소위원회」를 구성하여 공통 전망전제, 기준, 결과 등을 심의·조정하고 있음[관계부처합동 2025. 9.3. 보도자료(제3차 장기재정전망(2025~2065) 실시)]

- 제3차 장기재정전망소위원회 전체회의 운영비용은 1,450만원으로 나타남
  - 민간위원 회의 지급수당: 1,040만원, 회의장 임차료 및 회의 준비비: 180만원
  - 교통비 실비 및 수용비 등 기타 경비: 230만원

[표 3] 제3차 장기재정전망소위원회 전체회의 운영비용

(단위: 만원)

| 구 분  |              | 세부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액   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회의비  | 민간위원 회의 지급수당 | 위원 수(13명) × 1인당 회의지급 수당(20만원) × 회의 횟수(4)          | 1,040 |
|      | 회의장 임차료 등    | 회의장 임차료 및 회의 준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80   |
| 기타경비 | 기타           | 교통비 실비(1.7백만원) + 수용비(60만원)<br>*수용비: 자료인쇄 및 명패제작 등 | 230   |
| 합 계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450 |

자료: 기획예산처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제3차 장기재정전망소위원회의 장기재정전망 협의체 및 장기재정추계실무단 회의비는 168만원으로 나타남
  - 민간위원 회의 지급수당: 168만원

[표 4] 장기재정전망소위원회 협의체 및 장기재정추계실무단 회의비

(단위: 명, 만원)

| 구 분 | 위원 수(A) | 1인당 회의비 수당(B) | 금액(=A×B)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1차  | 4       | 14            | 56       |
| 2차  | 5       | 14            | 70       |
| 3차  | 3       | 14            | 42       |
| 합 계 |         |               | 168      |

자료: 기획예산처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사회보장제도 관련 연금 및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,272만원(연평균 1,054만원)으로 추계됨

- 제3차 장기재정전망소위원회 운영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(전망)을 반영하여 추계

[표 4] 사회보장제도 관련 연금 및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  
(단위: 만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| 2027  | 2028 | 2029  | 2030 | 2031  | 합계    | 연평균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장기재정전망<br>전체회의 운영비 | 1,513 | —    | 1,574 | —    | 1,638 | 4,725 | 945   |
| 협의체 및<br>추계실무단 회의비 | 175   | —    | 182   | —    | 190   | 547   | 109   |
| 합계                 | 1,688 | —    | 1,756 | —    | 1,828 | 5,272 | 1,054 |

## 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은 ‘제3차 장기재정전망소위원회(운영기간: 2024~2025년)’의 운영비용 수준을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의 실시 절차·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추계세제총괄과 | 최천규 | 김신애 |

-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 |
| 최천규 | 02-6788-4653 | choi1009@assembly.go.kr |